

「교원 성과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0. 2. 17. 제정 판 (시행 2010. 2. 17.) → 2012. 11. 26. 개정 판 (시행 2012. 9. 1.)

바뀜 5 · 신설 0 · 삭제 1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163/compare?from=404&to=405> · 내려받은 때 2026. 10. 22. 오후 8:22:31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u>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u>성과상여금</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급은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0%부터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지급 기준)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u>교원업적평가와 직원직무평가</u> 를 기본으로 한다.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u>교원업적평가</u> 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기본 의무) <u>교원과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정기예배와 채플참석, 강의, 교수협의회참석, 학생지도, 강의평가, 기타 교육참석 등)은 본인의 업적평가나 직무평가 점수와는 별도로 평가되어 가감된다.</u>	제4조 삭제
제5조(성과급 불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대학에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 연구업적평가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③ 예배나 채플에 불참하는 정도가 규정에 미달일 경우 ④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삼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했을 경우 ⑤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조건부 유예 혹은 탈락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 ⑥ 언론매체나 유인물을 사용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⑦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⑧ 당해 년도에 징계를 받았거나 대학과 소송관계에 있을 경우 ⑨ 한국연합회 교역자 복무지침과 대학 교원 복무규정을 어겼을 경우 ⑩ 특별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성과급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추가 성과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을 받지 않는 7급 이하의 팀장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26>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현 행	개 정 안
② 대학이 수행하는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 ③ 학생관리지표 (재학생총원률, 학생중도탈락률) 가 3등급 이상 초과달성한 학과 및 1등급을 받은 학과의 전 교수들 ④ 최우수 교수들 (연구중심교수 1인, 교육중심교수 1인) ⑤ 모범직원들 (기획부서 1인, 관리부서 1인, 서비스부서 1인)	전 교수들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원 성과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 교원과 직원의 성과급에"를 "한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 범위) 성과상여금은 적절한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액의 70%부터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삭감사유 발생시 70%를 하회할 수 있으나 추가 사유시에는 130%를 상회할 수 없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백분율로 평가되는 교원업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별표서식](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성과상여금 삭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되 삭감율은 별표를 적용한다.

- ① 지급 당해 연도 교수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
- ② 지급 당해 연도에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③ 지급 당해 연도 승진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④ 지급 당해 연도에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삭감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 ⑥ 평가 당해 연도에 휴직 중이었던 경우(미지급)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가 성과상여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추가 지급률은 [별표서식]을 적용한다.

- ① 당해 연도 교내 학과평가 결과 1~3순위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 교수들
- ② 각 부문별 올해의 교수
-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 결정을 내린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